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3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2. 3. 14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: 마포구청장
- 제안일: 2022. 2. 28.
- 회부일: 2022. 3. 4.(의안번호 : 22-28)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상에 규정된 통장 임명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1조)
- 통·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(안 제5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

5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 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상에 규정된 통장 임명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(안 제1조)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
 - (안 제5조)에는 통·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

6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. 1. 13. 전부 개정되어,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통장 임명 권한이 생기는 동장은 통장 임명 시 주민 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 위촉해야 할 것임.

【관계법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[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]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 12. 31., 타법개정]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